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이훈기 · 박정 · 박지원

김주영 · 허종식 · 박찬대

이재관 · 이재강 · 임미애

박용갑 · 정일영 · 최혁진

이병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

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심리·사고·행동을 현저하게 왜곡하거나, 직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예측하여 특정인의 평가·채용·징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 다만, 의료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 광장, 공원, 공연장, 전시장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다. 생체인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를 추론하여 사람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마.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신뢰도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특정인의 권리·

의무 또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

바.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를 운용하

는 인공지능시스템

사.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

성을 평가 또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시스템.

아.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

능시스템

제8조제1항제10호 중 “규율에”를 “및 금지된 인공지능 규율에”로 하

고, 같은 항 제11호 중 “인공지능과”를 “인공지능 및 금지된 인공지능

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된 인공지능 예외적 승인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금지된 인공지능의 이용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금지된 인공

지능을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종자, 납치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인공지능의”를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공지능에”를 각각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공지능의”를 “인공지능

및 금지된 인공지능의”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해당”을 “및 금지된 인공지능 해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1조제2항”을 각각 “제29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별 칙)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u> <u>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u> <u>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u> <u>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u> <u>한다.</u></p> <p><u>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u> <u>을 미쳐 심리·사고·행동</u> <u>을 현저하게 왜곡하거나,</u> <u>직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u> <u>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u> <u>예측하여 특정인의 평가·</u> <u>채용·징계 등에 중대한</u> <u>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u> <u>스템. 다만, 의료 또는 안</u> <u>전을 목적으로 개발·이용</u> <u>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나. 도로, 광장, 공원, 공연장,  
전시장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으  
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다. 생체인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를 추론하여 사람을 개별  
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  
하여 생체인식 데이터베이  
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마.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직업적 특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신뢰도 점수를 산출함으로  
써 특정인의 권리·의무  
또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  
스템

바.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p><u>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u>를 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p> <p>사.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 또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시스템.</p> <p>아.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p>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고영향 인공지능 <u>규율</u> 에 관한 사항	10. ----- 및 금지된 <u>인공지능 규율</u> 에-----
11. 고영향 <u>인공지능과</u>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1. ----- <u>인공지능 및 금지된 인공지능과</u> ----- ----- -----
<신설>	11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p>12. · 13. (생략) ②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u>금지된 인공지능 예외적 승인에 관한 사항</u></p> <p>1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29조의2(금지된 인공지능의 이용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u></p> <p><u>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p> <p><u>2. 실종자, 납치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 등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u></p> <p><u>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u></p>
---	--

#### 4.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의 확인) ① ---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에-----





<신 설>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